

LHCS 10 10 10 10 : 202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2020년 12월 9일 제정

<http://www.kosc.re.kr>



LH 전문시방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LH 전문시방서(LHCS ;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는 국가건설기준(KCS ; 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을 기본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방기준 발간 시점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방 기준으로 공사시방서 작성 시 반드시 최신 시방기준 등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시방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LH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LH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내용 및 체계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문시방서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LH 전문시방서	• LH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12.6)
LHCS 10 10 10 10 : 2020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

제 정 : 2020년 12월 9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기성검사	1
1.6 예비 준공검사	2
1.7 준공검사	3
1.8 설계변경 요청	4
1.9 준공기한 조정	5
1.10 하자에 대한 조치	5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5
2. 자재	7
3. 시공	7
부록	8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LHCS 10 10 15 품질관리
- 공사계약일반조건(LH)
- 공사계약특수조건(LH)
- LH 계약금액 조정기준(LH)

1.3 용어의 정의

- 기성검사: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함
- 예비준공검사: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 준공검사: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 하자검사: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

- (1) 기성검사원
- (2) 준공검사원
- (3)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 (4) 준공기한 연기원

1.5 기성검사

1.5.1 기성검사 일반사항

- (1)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 (4)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부록 4)
-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 (7)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 (8)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5))
- (11)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부록 4))

1.5.3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 (5)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6)

1.5.4 기성부분 공정표

-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1.5.5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

-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1.6.1 예비 준공검사 일반사항

- (1) LH는 LHCS 10 10 35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2)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7 준공검사

1.7.1 준공검사 일반사항

- (1)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1.7.2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 (1) 준공 검사원(부록 9)
- (2) 준공 총괄 내역서(부록 10)
- (3) 준공 내역서(부록 11)
- (4)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5)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제39조))
 -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LHCS 10 10 15(부록 2))
-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 12호)
- (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LHCS 10 10 20 10(부록 4))
-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0))
- (1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LHCS 10 10 20 10(부록 5))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 (1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LHCS 10 10 25(1.11.6))
- (14)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 (15)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별지 제5호 서식))
- (16)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 (17)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 (18)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 (19) 신기술 사후평가서
- (2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21)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 (2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2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LHCS 10 10 35(1.7))
- (2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 (25)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 (26) 공사기록부(부록 13)

- (27)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 (부록 14)
- (28) 하자보수운영계획서
- (29) 제품보증서
- (30)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1.8 설계변경 요청

1.8.1 설계변경 요청 일반사항

-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 (1)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 (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설계 변경 사유서
 - ② 공사비 증감 내역서
 - ③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 ④ 설계 변경 내역서
 - ⑤ 변경 설계도면
 - ⑥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 ⑦ 공사기한 검토서
 - ⑧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 (3) 제출시기 및 부수
 - ①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 ② 제출부수 : 2부

1.8.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1.8.4 설계변경 작업지시

-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LH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 (2)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8.5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LH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1.9 준공기한 조정

1.9.1 준공기한 조정

- (1)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특수조건(제35조)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준공기한 연기원(부록 16)
 -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 ④ 사업소(장) 의견서
 - ⑤ LH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 ⑥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1.9.2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1)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 및 LH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따른다.

1.9.3 제출시기 및 부수

- (1)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 (2)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1.10 하자에 대한 조치

1.10.1 하자에 대한 조치 일반사항

- (1)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2)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1.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일반사항

-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1.11.2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

- (1)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무게에 의한 검측

가.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 항목의 검측

가.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11.3 검측 지원

- (1)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LH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4 기성부분 금액

- (1)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부록 1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 (인)

- 1. 공 사 명 :
- 2. 공 사 위 치 :
- 3. 계 약 금 액 :
- 4. 계 약 연 월 일 :
- 5. 착 공 연 월 일 :
- 6. 준공예정연월일 :
- 7. 현 재 공 정 : 년 월 일 현재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 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2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금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6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부록 9

준공검사원

공사감독경유 :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연 월 일 :
5. 착 공 연 월 일 :
6. 준공예정연월일 :
7. 준 공 연 월 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10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금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금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13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 | | |
|------------------|------------------|
| 1. 건설공사 개요 | |
| 가. 건설규모 | 나. 공사추진경위 |
| 다. 공사전경사진 | 라. 배치도 |
| 마. 준공사진 | 바. 공사현황 |
| 2. 현장기술자 현황 | |
| 가. 공사감리/공사감독자 | 나. 수급인 현장요원 |
| 3. 현장여건 현황 | |
|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 난방방식 :
- 대지면적 : m²(평)
 - 건축면적 : m²(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m²(평)
 - 용 적 률 : %
- 공사기간 :
-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 후보지 선정일 :
- 용 지 매 입 :
- 사업승인요청일 :
- 사업 승인 일 : (○○도 고시 제○○○호)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사 착공 일 :
- 준공 예정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 배치도 부착

바. 공사현황

- 공사명 :
-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사기간	수급인	도급공사비	형별	면적(m ²)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종	직급	성명	관리기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구 분	공종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 자 또는 현장관리 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 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고
									생산업체연 락처기재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험기구	규격	수량	비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종	품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30% 미만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부록 15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

지 구 명 :

수 급 인 :

검사기간 :

검사확인내역

동	호수	지적 건수	검사자			확인	비고
			소속	직위	성명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한성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준호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강기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승호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택훈	한국토지주택공사	김기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백기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주)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봉주	공주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더블유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소병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주)우진도장건설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이용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박지훈	인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안은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분야별 가나다순)

LHCS 10 10 10 10 : 202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2020년 12월 9일 발행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련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9(총무공동)
☎ 1600-1004(대표)
<https://www.lh.or.kr/>

작성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9(총무공동)
☎ 1600-1004(대표)
<https://www.lh.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http://www.kcsc.re.kr>